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33
----------	-------

발의연월일 : 2026. 5. 12.

발 의 자 : 조인철 · 장종태 · 이정문
이정현 · 김우영 · 박지혜
정준호 · 박희승 · 서삼석
박용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책임주체의 확인이 곤란할 수 있음. 또한 국내대리인의 연락 가능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책임체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외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6조 및 제43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 ④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3. 제5항에 따른 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변경의 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공개 및 통보 방법·절차, 제5항에 따른 연락가능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3. 제5항에 따른 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신 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신 설>

3. (생략)

② (생략)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변경의 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공개 및 통보 방법·절차, 제5항에 따른 연락가능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과태료) ①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